

# 예 산 총 칙

## 2011년도 추경 2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90,652,162	35,719,565
일반회계	824,722,375	24,741,671
특별회계	365,929,787	10,977,894
공기업특별회계	143,499,346	4,304,980
상수도사업	58,755,310	1,762,659
하수도사업	84,744,036	2,542,321
기타특별회계	222,430,441	6,672,913
공유재산관리	39,132,748	1,173,982
의료급여기금	4,207,455	126,224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115,000	33,4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210,256	36,308
도시재정비촉진	22,175,545	665,266
도시개발	21,573,712	647,211
기반시설	1,799,520	53,986
교통사업	32,776,664	983,300
도시철도건설사업	98,439,541	2,953,18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458,02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